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03호로 2021년 2월 17일 정선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의정운영공동경비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동경비 추가
(안 제2조)

4. 참고사항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2020. 2. 19. ~ 2. 2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별표 6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대상에 기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추가되었음.
- 이를 따라 **안 제2조제1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참 고 자 료

1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

여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세출예산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일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은 별표5와 같다.
3.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은 별표6과 같다.

별표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1. 개 요

-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내역을 공개하며 대상 비목은 아래와 같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
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
역을 공개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내역을 공개
 - * 지방의회는 의회 전체의 명의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집행내역을 공개
- 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한다.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규칙)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
개 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